

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9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차규근 · 서왕진
신장식 · 황운하 · 박은정
김준형 · 정춘생 · 정혜경
김윤덕 · 전종덕 · 황명선
장종태 · 이해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.

그런데 문학·미술·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공연법」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, 무용 창작과 실연,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·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

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,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, 전문인력을 양성하며,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,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·지원하며,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,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.

라.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,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,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

지).

무용진흥 및 발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,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무용”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예술로서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, 실용무용 및 생활무용을 말한다.
2. “무용인”이란 무용과 관련된 창작·공연·교육·비평·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무용문화산업”이란 무용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(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)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간

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
3.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4.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
5.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
6. 무용 교육 및 무용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
7. 그 밖에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

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(이하 “관계 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 ① 국가는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
2. 무용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

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

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을 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진흥을 위하여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무용 창작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무용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무용문화산업의 진흥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무용의 날)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무용의 날을 지정한다.

제15조(국립무용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·발전·진흥 및 향유 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(이하 “국립무용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국립무용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·보급
2.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지원
3. 무용 자료의 수집·제공·전시 및 관리
4. 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
5. 무용 교육 및 자료 개발
6. 무용인의 복지 향상 정책 및 인권 보호
7. 무용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
8. 그 밖에 무용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보급·발전·진흥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다.

④ 그 밖에 국립무용원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무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학교 등의 무용 진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

구성원의 정서와 교양을 위하여 무용과 관련된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노인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외계층(이하 “소외계층”이라 한다)의 무용 창작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외계층의 무용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대상 무용 창작 및 교육 사업과 무용 관련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과 관련된 직업 창출, 진로 탐색 기회 확대, 직업분류 개발 등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인의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사업 및 무용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